보 도 해 명 자 료
('16. 8. 3)

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
제목 : 한화케미칼 공장 매각 '기활법' 혜택 첫 사례

(문화일보 16면, 8.3)

1. 기사내용

□ 정부가 **한화케미칼과 유니드의 사업재편**에 **금융·세제**를 지원하기로 함에 따라 동 건이 **「기업활력법」의 첫 번째 사례**가 될 예정

○ 동 사업재편은 **「기업활력법」 시행 전**에 이루어지는 것으로, 고용공급 해소라는 입법 취지에 맞게 **법이 소급 적용될 것으로 망**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

□ 「기업활력법」은 아직 **시행 전**(8.13일 시행예정)이므로, **기업들의 사업재편계획 승인 신청은 물론 그 승인 여부도 결정된 바 없음**

○ 앞으로 **법 시행** 이후 **기업들이 신청**하면 **주무부처 검토, 심의위원회 심의** 등의 절차를 거쳐 **주무부처가 최종승인 여부를 결정**할 예정

□ **계약 이후 등기가 완료되기 전**까지는 **사업재편계획을 신청**할 수 있으나, 사업재편계획 승인 전 **등기 완료로 구조변경 행위가 종결된 경우에는 법이 소급 적용되지 않음**

※ 문의 : 산업통상자원부 기업정책팀 허정수 팀 장(044-203-4831)
문경준 사무관(044-203-4833)